인삼특용작물계열화(융자)

세부사업명	인삼·특용작물계	열화사업(계속)			서	목	기타 민간 융자금	
내역사업명	인삼·특용작물 7	예약재배, 수매사	·업		-		19,418	
사업목적	인삼·특용작	물 공급 및 유통 .	구조 7	H선, 농가	소득 보전			
사업 주요내용	7	지급하는 계약자·	금 융제	다 지원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○ 인삼산업법 ○ 농수산물유통	제3조 통및가격안정에관	한법률	를 제57조				
지원자격 및 요건	○ 지원조건 - 인삼계열화 - 특용계열화 - 인삼 수매지	○ 사업대상 :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 ○ 지원조건 - 인삼계열화 : 계약재배 금리 0%(5년 거치 일시상환) - 특용계열화 : 계약재배 금리 0%(1~3년 거치 일시상환), 수매자금 금리 2.5~3%(1~3년 거치 일시상환) - 인삼 수매자금(이차보전) : 금리 2.5% 또는 변동금리(5년 거치 일시상환) * '인삼원료삼수매사업'은 3년 거치 일시상환						
지원한도	○ 계약재배- 인삼 : 10a당 3,300천원- 특용작물 : 농가 계약재배 금액의 20~50% 범위내에서 지급○ 수매단가 : 계약대상자(농가)와 협의하여 결정							
재원구성(%)	국고	지방비		융자	80	자부	· 담 20	
						중 확대를 통한 소비자 약정 후 계약 참여 농글 개 물량 수매자금 융자 개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 기상환) 일시상환), 수매자금 금리 동금리(5년 거치 일시상 1위내에서 지급 80 자부담 20 (단위 : 백 2020년 2021년 24,272 24,2 19,418 19,4 - 4,854 4,8 자 연락처 막태준 044-201-2 감선이 044-201-2 수(인삼) 02-2079-8 절(특용) 02-2079-8	<u> 단위 : 백만원)</u>	
	구 분	2018년	20)19년	2020년		2021년	
연도별	<u> ㅇ합 계</u>	24,272	,	24,272	24,2	보전 확대를 통한 약정 후 계약 물량 수매자금 상환) 시상환), 수매: 금리(5년 거차 임내에서 지급 임 자부 (1) 2020년 24,272 - 19,418 - 4,854	24,272	
재정투입 계획	- 보 조 - 융 자 - 지방비	19,418		19,418 -	_		- 19,418 -	
	_ 자부담	4,854		4,854	4,8	보전 확대를 통한 소비자 F 정 후 계약 참여 본 물량 수매자금 융자 당환) 시상환), 수매자금 금 금리(5년 거치 일시경 선택: 19 - 24,272 24, 	4,854	
담'	당기관	담당과			}당자 교 바데즈		연락처 44 201 2220	
농림축	^류 산식품부	르므 그 워(베스(오) 마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		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		· ·		
농협	경제지주	인삼특작부		과장 김	 I민수(인삼) I성철(특용)	07	2-2079-8266 2-2079-8265	
신청시기	사업대상자 : '2	0.3.15일까지	,	사업	시행기관	농	협경제지주	
관련자료	농림사업정보시	스템(AGRIX) 사임	걸시행 [;]	지침서				

I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(예정지 관리 포함)를 통해 생산된 고품질 청정 인삼·특용작물을 수매·가공·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
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
 - -「식품위생법」제37조에 따라 가공업 허가를 받은 가공업체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가. 사업대상자

- 지원자격: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
- 선정우선순위
 - 국가식품클러스터(전북 익산) 입주(예정) 사업대상자
 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선정하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우수 조직
 - '18년도 및 '19년도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, 수출 실적, 판매 실적 등을 감안 하여 계약재배 면적.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
 - 특용작물(한약재) 저온·가공 등 상품화 시설을 보유한 사업대상자
 - '인삼원료삼수매사업' 대상자인 경우 인삼제품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 법인,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자

나. 계약재배 참여 농가

- 지원자격 : 인삼(4년근 이상) 또는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
 - 인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당해 연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

○ 선정우선순위

- 인삼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
-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, 사업추진 방해자, 전년도 계약위반 농가, 토양검사 (GAP기준)에 불합격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
- * 계약재배 대상 농가의 제외기준은 세부 운용지침에서 별도로 정함

3. 지원대상

○ 인삼·특용작물 계약을 통한 수매·가공·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가공업체

4.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

- 계약재배
 - 사업대상자가 인삼·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약정 후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
- 수매자금
 - 사업대상자가 인삼·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한 물량을 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
 - * 수매 전 계약대상자(농가)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,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(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확인) 수매(잔류농약 분석결과 불합격된 농가의 명단은 불합격 판정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)
 - *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단기간(3년)의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

자금 지원기간 설정 예시	('20. 6. 15일 농가 지원시)
인삼 계약재배 사업	인삼원료삼수매 지원사업
<당해년도 이식한 2년근 계약시>	▶ 4년근 계약 후 6년근 수매시
▶ 4년근 : '20. 6. 15~'22. 12. 25	- '20. 6. 15~'22. 12. 25
▶ 5년근 : '20. 6. 15~'23. 12. 25	▶ 3년근 계약 후 5년근 수매시
▶ 6년근 : '20. 6. 15~'24. 12. 25	- '20. 6. 15~'22. 12. 25

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○ 인삼·특용계열화 : 국고융자 80%. 자부담 20%

* 농협 자부담 20% : 농협경제지주 10% 지역농협 10

- 인삼계열화 : 계약재배 금리 0%(5년 거치 일시상환)

수매자금(이차보전) 금리 2.5% 또는 변동금리(5년 거치 일시상환)

- * '인삼원료삼수매사업'은 3년 거치 일시상환
- 특용계열화 : 계약재배 금리 0%(1~3년 거치 일시상환) 수매자금 금리 2.5~3%(1~3년 거치 일시상환)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계약재배(매취사업)
 - 계약주체(사업대상자):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
 - 계약대상 : 인삼(4년근 이상)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
 - 계약체결 : 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월31일까지 계약 완료
 - * 인삼의 경우, 계약조건에 농약잔류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기준 이내로 설정하거나 안전성 관련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계약주체가 요구할 수 있음
 - * '인삼원료삼수매시업'은 생산 예정 연근의 최소 2년 전(3년근 또는 4년근)에 계약체결해야 지원 가능
 - 계약재배 자금 지원
 - · 지원규모: (인삼) 17,353백만원, (특용작물) 1,045백만원
 - * 인삼 10a당 3.300천원 한도. 특용작물 농가 계약재배 금액의 20~50% 범위내에서 지급
 - ** '인삼원료삼수매사업'은 50ha 이내 지원
 - 지원시기 : 계약체결시
 - · 지원조건 : 금리 무이자, 인삼 5년 거치 일시상환, 특용작물 1~3년 거치 일시상환(단, 연근 등은 재배기간에 따라 계약자금 지원시 부터 수확시까지)
 - 사업대상자의 의무
 - · 계약대상자(농가)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 전까지 재배이력 관리
 - · 계약주체(사업대상자)는 계약대상자별·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의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
 - 일반업체와 계약한 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농협에 위탁교육 가능

- 계약재배(수탁사업)
 - 인삼농협은 매취사업 계약단가(3,300천원/10a)의 100% 범위 내에서 수탁사업 실시 가능
- 수매사업 및 판매
 - 수매대상 : 계약재배 수확 물량
 - 지원조건
 - (인삼) 5년 거치 일시상환(고정금리 기준 연리 2.5~3.0%, 변동금리 가능)
 - * 단. '인삼원료삼수매사업' 참여 업체는 3년 거치 일시상환
 - · (특용작물) 1~3년 거치 일시상환(고정금리 기준 연리 2.5~3.0%, 변동금리 가능)
 - * 특용작물 재배 특성에 따라 수매 지원 조건(1년~3년 거치) 적용(예 : 1년생 작물 = 1년 거치, 3년생 작물 = 3년 거치)
 - 지원규모: (인삼) 융자규모 약 23,500백만원(이차보전), (특용) 1,020백만원
 - 수매조건 : 수매 전 계약대상자(농가)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
 - *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 자금 회수(계약자금 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위약금 부과 징수)
 - 수매기간 : 연중
 - 자금지원 :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수매하기 전 사업대상자의 수매계획 및 회전운용 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금 지원
 - 농협경제지주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및 자금 관리
 - · 사업대상자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 내에서 수매자금으로 회전운용하고 동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 경제지주에 상환
 - · 일반업체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한 자금에 대해 수매자금으로 회전 운용하는 대신 수매자금의 20%를 2020년부터 매년 12월 20일과 최종 상환일에 농협경제지주로 상환
 - · 인삼계열화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 계열화 계약삼포에 한하여 수매시 수매자금 지원 가능
 - 수매정산 : 수매자금은 수매시 전액 지급하되, 수매금액에서 계약재배 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

- 수매물량의 처리
 - · 수매물량은 사업대상자가 수삼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
- 수매실적보고: 사업대상자는 2020년 수매실적을 12.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보고

표 사업추진체계

1. 사업신청단계

세부운영계획 수립(농협경제지주)

- 당해 연도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농협경제지주에서 인삼· 특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등에 공고('20년 2월)
 - *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과 특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후 시행

계약재배 신청(농업인)

- 사업대상자(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)는 사업 세부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대상자(농가)에게 계약재배 신청 홍보
-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인삼재배농가는 인삼경작 신고시(인삼산업법 제4조) 또는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때(예정지 관리단계 등)에 사업대상자에게 「인삼 계약재배 신청서」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신청
 - 업체가 특정 농협에 계약재배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농협에 수매 희망물량을 협의·신청
- 특용작물 재배농가는 「특용작물 계약재배 신청서」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 하여 신청

2. 사업자 선정단계

- 사업대상자 등은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0.3.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제출
 - 사업농협은 계약재배 참여농가의 신청면적을 농협자체 계약분과 업체의 계약사업 위탁분을 구분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제출
 -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 확정
 - * 특용작물 일반업체는 해당지역 농협경제지주 시·군 지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
 - 자체적으로 계약 및 수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업체의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0.3.15 일까지 농협경제지주로 제출
- 인삼·특용작물계열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시「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7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7항에 근거한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 단계에서 제외
- 인삼·특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재배 대상농가 선정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에 한해 선정하고, 인삼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

3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사업 및 자금관리 주체(농협경제지주)

- 농협경제지주는 농협·가공업체등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2.28일까지 시달
- 농협경제지주는 농협·가공업체 등의 사업계획에 대해 신청물량, 예년의 사업 실적, 재배규모 및 생산량, 사업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

자금관리 주체(농협경제지주)

- 자금배정 요구
 -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

○ 사업비 지원

-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의 확정된 계약·수매계획에 따라 자금 배정
- 농협·가공업체 등은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2020.7.31일까지 확인하고 계약재배 자금 지원
- 농협경제지주는 농협 및 업체별 계약재배자금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농협 또는 업체간 자금 전배 조치

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사업비 정산(농협경제지주)

○ 농협경제지주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·결산 하여 정산결과를 2021년도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사후관리(농림축산식품부, 농협경제지주)

- 사후관리 책임자 : 농림축산식품부, 농협경제지주
-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업농협의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, 지원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·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- 다만, 일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협경제지주가 계획(안)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,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을 확정하여 농협경제지주와 공동으로 시행
-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조사 등에 필요시 지자체(시·도, 시·군) 협조

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

○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 관리하고, 인삼농협은 수매자금 회전운용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별도계정으로 적립하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연간 사용계획 및 전년도 사용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- 인삼농협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업대기자금(수매자금)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
-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 가능
 - ·사업추진 및 사업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(전산개발 및 보급비, 교육·홍보비, 수매물의 판매 촉진비, 사업 손실보전 비용, 인센티브 등)
 - ·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전성 분석비, GAP 인증 수수료 등 행정비
 - ·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
-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·특용작물계열화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

Ⅲ 평가 및 환류

1.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

○ 2020년 인삼계열화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제출('20.1월까지, 농협경제지주)

2.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

○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업대상자별 '21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('20.6월말)

3. 평가

<성과평가>

- 평가원칙, 평가절차 및 방법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정하여 시행
- 평가결과는 2021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<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>

- 우수 사업주체 : 평가결과 우수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 자금 충당금 우선지원,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 등
- 부진 사업주체 :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평가결과 부진사업주체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지원을 제외하거나 감액
- 계약 미이행자 :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등
 - *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세부계획은 '인삼계열화사업 세부운용지침(농협경제지주)' 마련

【별지 제1호】

인삼 계약재배 신청서

	성	명			생	년월일			•		
경작자	주	소									
	전:	화번호				(H	HP)				
				계	약 재	배 목적	물				
경 작 지						지목	지적 면적	인 삼 식재면적	식 재 년 월 일		
					m²	m²					
총식재면	적	(m [*] 평)	수 예정			식재구분	□ 직파□ 식재			
수확예정			년근 근			경작지	□ 자 가 □ 임 차				
년 근	□ 5년근 자조금 □ 납부		□ 납부 왼	완료 □미납							
상기와 같이 계약재배를 신청합니다											
20 년 월 일											
신청자 (서명 또는 인)							인)				
○○농업협동 조합장 또는 ○○업체 대표 귀하											
분임 1. 계약재배 목적물 위치도 1부 2. 경작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도 1부 3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(임차시에 한함)											

【별지 제2호】

특용작물 계약재배 신청서

	성	명							
경작자	주	소							
	전화	번호			(HP	')			
			계	약 재 배	목 적 물				
	78	[]] 작지		재배품목	재배면적 (㎡)	수 확 예정일	수 확 예상량 (Kg)	경작지구분	
								□ 자가□ 임차	
								□ 자가 □ 임차	
								□ 자가 □ 임차	
								□ 자가 □ 임차	
상기와 같이 계약재배를 신청합니다									
20 년 월 일									
신청자 (서명 또는 인)							- 인)		
○○농업협동 조합장 또는 ○○업체 대표 귀하									
2. 2]작지	의 토	적물 위치도 1 [±] 지대장 등본 5 서 사본 1부(임	및 지적도					